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22)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엄대석)

중원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위

- 제 출 자: 성남시장
- 의안번호: 제5195호

2. 제안이유

- 2023. 12. 31.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하여 경로당이 지역 사회의 실질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노인복지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 관내 74개소 경로당

(단위: 개소,명)

구 분		아파트		단독		임차		복지회관	
개 소	회 원	개 소	회 원	개 소	회 원	개 소	회 원	개 소	회 원
74	2,576	38	1,230	22	781	7	216	7	349

- 민간위탁 권역별 현황

권역별	행 정 동	경로당수	현재수탁자(법인명)
계	2권역 11개동	74개소	
1권역	성남, 중앙, 금광 1~2, 은행 1~2동	36개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권역	상대원 1~3, 하대원, 도촌동	38개소	상대원1동복지회관

○ 위탁개요

- 위탁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 위탁내용: 경로당이 지역사회 실질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강사, 실습전문가 확보 및 운영
 - 교육기간 중 경로당 어르신 관리
- 신청자격: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 위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예산지원(예정)액: 100,000천원(시비 100%)

(단위: 천원)

계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비고
100,000	66,332	33,000	668	2개 기관 각50,000

※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소요예산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100,000		
인건비	급여	49,764	· 2,073,500원×2명×12월 = 49,764,000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복리후생비	1,200	· 50,000원×2명×12월 = 1,200,000원	
	명절수당	5,000	· 1,250,000원×2명×2회 = 5,000,000원	
	사회보험료	5,568	· 232,000원×2명×12월 = 5,568,000원	
	퇴직적립금	4,800	· 200,000원×2명×12월 = 4,800,000원	
운영비	강사료	33,000	· 30,000원×22과목×50회 =33,000,000원	
	운영비	668	· 사무용품비 등 334,000원×2개소 = 668,000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7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 향후 추진내역

- 위탁모집 공고: 2023년 10월
- 수탁신청서 접수: 2023년 10월~11월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11월
- 위·수탁 협약서 체결: 2023년 12월

5. 검토 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¹⁾ 및 경기도『경로당활성화사업 운영 안내』에 따라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로당활성화」 사업 사무를 노인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강사, 실습전문가 확보 및 운영
 - 교육기간 중 경로당 어르신 관리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노인복지법」 제37조제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시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2에 ‘시장의 소관 사무 중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복지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경로당활성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평가를 통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4. 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신설 2013.06.28>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종합복지관리사 주요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06.28>

1.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 관리

2. 경로당 회원 및 해당지역 노인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 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2020.2.24.>

1.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2. 관계공무원<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3. 시의원 2명<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07, 2020.2.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07.>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2.12.07., 2019.07.15.>